

일상 속 작지만 확실한 변화

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

작지만 확실한 혁신, 내 삶에 바로 와닿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소개합니다.
임신·출산부터 어르신 건강까지,
올해 1분기에 새로워진 주요 소·확·신 정책들을 만나보세요.



1

임신·출산

난임시술 일정 조정이 한결 여유로워졌습니다

난임시술을 준비하다 보면 시술 일정 조정이나 병원 대기 등 부득이하게 기한을 넘기기 일쑤입니다.
기한 내 시술을 시작하지 못하여 재신청하는 불편함이 줄어들 수 있도록 지원결정 통지서 유효기간을 늘렸습니다.



[난임시술 지원결정 통지서¹⁾ 유효기간 연장](1.1.)

개선 전	개선 후
 3개월	6개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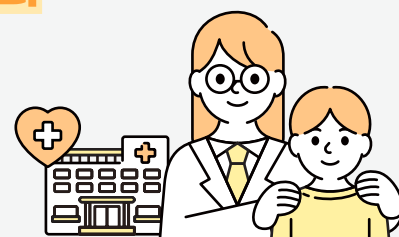
1) 시술비 지원 신청 시마다 보건소에서 지원자격 확인 후 지원결정통지서 배부(유효기간 내 시술 시작 필요)

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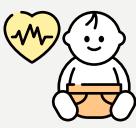
아동

치료비 걱정은 덜어드리고, 예방관리는 더 넓게 지원합니다

태어날 때부터 세심한 케어가 필요한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가 보다 안정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의료비 지원을 늘렸습니다.
또한 아이들의 건강한 치아관리를 위해 시범지역 내 모든 초등학생이 치과주치의를 통해 구강검진과 예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넓혔습니다.



[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한도 상향](1.1.)

개선 전	개선 후
 (미숙아) 최대 1000만원 (선천성 이상아) 최대 500만원	(미숙아) 최대 2000만원 (선천성 이상아) 최대 700만원 ¹⁾

1) 선천성이상 질환이 있는 미숙아는 지원한도 합산 적용(최대 2700만원)

[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(9개 지역²⁾) 지원대상 확대](2.1.)

개선 전	개선 후
 지원대상: 초등 1·2·4·5학년	지원대상: 초등 전 학년

2) 서울특별시, 대전광역시, 강원 원주시, 전남 장성군, 경북 경주시, 경북 의성군, 경남 김해시, 광주광역시, 세종특별자치시

3

어르신
·
장애인

특별재난선포지역 보상금 때문에 연금이 깎이지 않도록 개선했습니다

더 많은 어르신이 일상 속 방문 건강관리와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연계해 든든한 **통합돌봄**을 제공합니다.

또한 태풍·홍수·대형화재 등 자연·사회 재난으로 입은 피해로 받은 보상금이 재산으로 잡혀 **기초연금**이나 **장애인연금** 대상자에서 탈락되는 일이 없도록 산정방식을 개선했습니다.



[보건소 방문건강관리서비스 대상 확대](1.1.)

개선 전	개선 후
 장기요양등급자는 제외	장기요양등급 4~5등급¹⁾은 이용 가능

1) 의료·요양 통합돌봄 대상자

[기초연금, 장애인연금의 재난보상금 소득산정 제외](1.1.)

개선 전	개선 후
 특별재난 선포지역 보상금이 금융재산에 반영되어, 기초·장애인연금 대상자 탈락 또는 감액 가능성 존재	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재난 피해를 사유로 받은 정부지원금, 후원금품 또는 민간보험금 등은 기초·장애인연금 소득인정액²⁾ 산정 시 재산에서 제외

2) 조사가구(단독·부부)의 근로소득,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, 금융재산,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

직접 방문신청하는 부담은 줄이고, 건강관리는 일상까지 챙겨드립니다

보조기기 지원을 신청하러 번거롭게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까지 갈 필요 없이, 이제 **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**할 수 있습니다.

단순 치료 중심이었던 건강관리 지원도 예방접종이나 운동 프로그램 같은 **일상적인 관리**까지 범위를 넓혔습니다.



[장애인보조기기 무상지원 서비스¹⁾ 온라인 신청 개시](1.5.)

개선 전	개선 후
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야만 신청 가능	복지로 누리집(www.bokjiro.go.kr)· 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

1)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용 의복, 안전손잡이, 보행차 등 장애인 보조기기 46품목을 1인당 연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3개 품목 지원

[자립지원 대상자의 건강관리 지원범위 확대](3월 중)

개선 전	개선 후
 의료비(검사비·치료비)만 지원 ²⁾	건강유지 및 질병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비 지원 * 예방접종비·진단비·헬스장 및 수영장 등 건강관리 프로그램도 가능

2) 반드시 필요에 의한 검사에 한하여 지원(의료비 지원 내용으로 검사 비용, 치료 비용 등 의료목적 중심의 비용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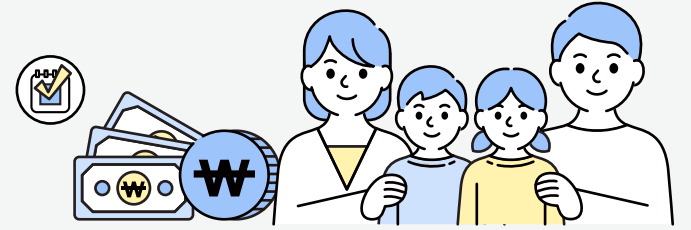
4

저소득
가구



의료급여 환급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기한을 쉰니다

의료급여 수급자가 본인부담 환급금¹⁾을 뒤늦게 알아
환급 신청 기한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
환급 가능 사실을 알게 된 시점부터 기한을 세어,
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.



1) 환급금 발생 사유: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변동(건강보험 가입자 → 의료급여 수급자, 의료급여 2종 수급자 → 의료급여 1종 수급자) 및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 자료 제공 지연 등 수급자 귀책사유 없이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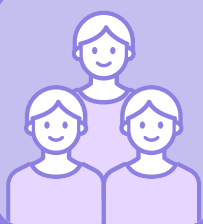
[의료급여 본인부담금 환급 소멸시효 개선](1.1.)

개선 전	개선 후
 본인부담금 발생일로부터 3년 경과 시 소멸시효 완성²⁾	수급권자가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음을 인지한 날부터 3년으로 완화

2) 수급권자가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지 못해 소멸시효(본인부담금발생일로부터 3년)가 도과한 경우 환급받을 수 없었음

5

모든 국민



나빠지기 전에 알기 힘든 폐 건강, 검진으로 확인합니다

인지도가 낮아 방치하기 쉬운
만성 호흡기 질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
국가건강검진에 '폐기능검사'를 추가했습니다.
특정 연령에 도달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검사를 통해
폐질환을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.



[국가건강검진¹⁾ 항목 추가(폐기능검사 신규 도입)(1.1.)]

개선 전	개선 후
 폐기능검사는 국가건강검진 항목¹⁾에 포함되지 않아 본인이 비용을 부담해 검사	폐기능검사가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추가되어 무료로 검사 가능(56세·66세 대상)

1) 국가건강검진 검사항목: 흉부방사선촬영, 구강검진, 이상지질혈증, B형간염검사, 골다공증, 정신건강검사, 노인신체기능검사, 인지기능장애검사 등

